

제 289 회 임시회  
도시안전건설위원회

I·SEOUL·U  
너와 나의 서울

*"Seoul Is Tomorrow"*

## 서울기술연구원 정관 개정 보고

2019. 9.

# 서울기술연구원 정관 개정 보고

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정관 개정 사항을 보고 드림

## 관련근거 :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

제5조(정관) ② 연구원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## 정관 현황

- 정관명칭 :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정관
- 구 성 : 총 7장 39개조 및 부칙
- 제개정 현황
  - 2018. 3.27.: 제 정
  - 2018. 6.19.: 개 정
  - 2019. 3. 8.: 개 정

## 금번 개정사유

-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시정 관련 연구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정관에 반영
  - 정관[제4조]에서는 서울기술연구원의 사업범위를 ① 재난 예방 및 대응, ② 도시기반 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, ③ 물순환 및 하천관리 조사·연구로 규정하고 있으나,
  - 현 사업의 범위는 시정 관련 각종 기술 및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의 범위를 포괄하지 못하여, 연구사업의 분야를 구체화하여 정관에 명시하고자 함

- 市 수요부서로부터 요구되고 있고, 장래 요구될 수 있는 국가·市 행정 사무 등의 민간위탁을 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·市 사무 등의 위탁 수행근거를 정관에 반영
  - 서울시 출연기관에서는 정관의 사업의 범위에 국가·시 사무 등의 위탁 수행근거를 마련하여 위탁사무를 수행하고 있음

## □ 정관 개정사항

- 개정내용 : 사업의 범위(제4조) 구체화 및 위탁사업 시행근거 마련
  - 사업의 범위를 ‘조사·연구’에서 ‘조사·기술개발 및 연구’로 구체화하고, 시민생활환경·스마트도시·기후변화 등 연구범위 추가(조항 신설)
    - ▶ 당초 사업의 범위를 ‘조사·연구’에서 ‘조사·기술개발 및 연구’로 구체화
    - ▶ ‘시민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조사·기술개발 및 연구’ 신설
    - ▶ ‘스마트도시 조성·관리에 관한 조사·기술개발 및 연구’ 조항 신설
    - ▶ ‘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사·기술개발 및 연구’ 조항 신설
  - 선진 우수기술 발굴·평가 업무를 실증·기술사업화 지원까지로 범위 확대(조항 일부 개정)
    - ▶ ‘국내외 선진 우수기술 발굴 및 평가’ → ‘국내외 선진 우수기술 발굴·평가·실증 및 기술사업화 지원’으로 조항 일부 개정
  - 사업의 범위(제4조)에 위탁사업 시행근거 마련(조항 신설)
    - ▶ ‘서울특별시, 국가·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’ 조항 신설
- 이사회 의결 : 2019. 7. 4.

**신구조문대비표**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사업의 범위) 연구원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<u>조사·연구</u>를 수행한다.</p> <p>1. <u>재난 예방 및 대응(지진, 화재, 폭염·한파, 폭설, 산사태 등)</u></p> <p>2. <u>도시기반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(도로, 지하철, 주택건축, 교량 등)</u></p> <p>3. <u>물순환 및 하천관리(풍수해, 생태, 하수도 등)</u></p> <p>〈신 설〉</p> <p>〈신 설〉</p> <p>〈신 설〉</p> <p>4. <u>국내외 선진 우수기술 발굴 및 평가</u></p> <p>〈신 설〉</p> <p>5. 그 밖에 도시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</p>	<p>제4조(사업의 범위) _____</p> <p>_____ <u>사업을 한다.</u></p> <p>1. <u>재난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사·기술개발 및 연구</u></p> <p>2. <u>도시기반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사·기술개발 및 연구</u></p> <p>3. <u>물순환 및 하천관리에 관한 조사·기술개발 및 연구</u></p> <p>4. <u>시민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조사·기술개발 및 연구</u></p> <p>5. <u>스마트도시 조성·관리에 관한 조사·기술개발 및 연구</u></p> <p>6. <u>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사·기술개발 및 연구</u></p> <p>7. _____ <u>발굴·평가·실증 및 기술사업화 지원</u></p> <p>8. <u>서울특별시, 국가·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</u></p> <p>9. 〈현행과 같음〉</p>

**향후 일정**

- 시의회 보고후 서울시 승인 요청 (서울기술연구원→안전총괄과)
- 서울시 승인 후 정관 효력 발생

#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정관

제정 2018.03.27.

개정 2018.06.19.

개정 2019.03.08.

개정 2019.09.00.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은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민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정 관련 각종 기술,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·연구를 진행하여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 시민의 복리를 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명칭)**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 영문으로는 Seoul Institute of Technology(약칭 SIT)로 표기한다.

**제3조(소재지)** 연구원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7 (상암동, DMC산학협력연구센터)에 둔다.

**제4조(사업의 범위)** 연구원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한다.

1. 재난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사·기술개발 및 연구
2. 도시기반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사·기술개발 및 연구
3. 물순환 및 하천관리에 관한 조사·기술개발 및 연구
4. 시민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조사·기술개발 및 연구
5. 스마트도시 조성·관리에 관한 조사·기술개발 및 연구
6.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사·기술개발 및 연구
7. 국내외 선진 우수기술 발굴·평가·실증 및 기술사업화 지원
8. 서울특별시, 국가·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
9. 그 밖에 도시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## 제2장 임원 및 직원

**제5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** ① 연구원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

1. 원장 1명
2. 이사장 1명
3. 이사 10명 이하(원장 및 이사장 포함)
4. 감사 2명

② 제1항의 임원 중 원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.

**제6조(임원의 임면)** ① 임원은 제8조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, 원장, 이사장, 선임직 이사·감사는 시장이 임명한다. 단, 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.

②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서울특별시 안전총괄관
2. 서울특별시 재정기획관

③ 감사 2명 중 1인은 서울특별시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.

**제7조(임원의 임기)**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은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,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,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② 당연직 이사 및 당연직 감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에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.

③ 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.

**제8조(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)** ① 연구원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“추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.

1. 시장이 추천하는 자 2명
2. 서울특별시 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
3. 연구원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명

② 서울시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는 제1항 3호에 규정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-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.
  1. 경영전문가
  2. 과학기술분야 전문가
  3.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
  4. 공인회계사
  5.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  6. 연구원의 고유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
- ④ 기타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연구원의 규정으로 정한다.

**제9조(임원 후보의 추천절차)** ① 추천위원회가 임원후보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정 결원 직위에 대하여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추천된 임원 후보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연구원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 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임원의 직무)**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며,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다만 원장은 이사장에 선임될 수 없다.

②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원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 다만 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당연직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④ 감사는 연구원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.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을 발견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이사회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⑤ 기타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연구원의 규정으로 정한다.

**제11조(직원의 임면)** ① 연구원의 직원은 원장이 임면한다.

② 직원의 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·직무 분야에 대하여는 우수 전문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.

③ 직원의 임면, 승진 등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의 규정으로 정한다.

**제12조(임·직원의 복무)** 임·직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연구원의 규정으로 정한다.

**제13조(임·직원의 겸직제한)** 연구원의 원장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, 원장은 시장의, 직원은 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

**제14조(임·직원의 보수)** ① 연구원의 원장 및 직원의 보수는 보수규정에 의한다.  
② 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연구원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5조(비밀누설의 금지 등)** 연구원의 임·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이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16조(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)** 원장 또는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연구원 이익과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원을 대표하지 못한다. 이 경우 당연직 감사가 연구원을 대표한다.

**제17조(대리인의 선임)** 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연구원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.

**제18조(임원의 결격사유)**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연구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미성년자
  2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 3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 4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  5.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  6.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

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.

**제19조(임원의 해임)**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. 단, 제6조에 따른 당연직 이사 및 당연직 감사인 임원의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시장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.

1. 연구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2. 임원간의 분쟁·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3. 연구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4. 연구원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
5. 민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

### 제3장 자산 및 회계

**제20조(재산)** ① 연구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.

② 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.

1.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2. 설립 후 정부, 지방자치단체, 기타 법인 및 개인이 출연한 금전 또는 토지·건물 등의 부동산 및 기타 재산권
3.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결산상 잉여금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의결한 재산

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.

**제21조(재산의 관리)** ① 원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연구원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연구원의 기본재산을 매각,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**제22조(운영재원)** 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 등의 경비는 출연금,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, 사업수입금, 기부금 및 기타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.

**제23조(기금)** ①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  - 1. 서울특별시 출연금
  - 2. 중앙정부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
  - 3. 기업, 금융기관, 민간법인·단체 및 개인 등의 기부금
  - 4. 기금 적립금 및 이자 수익금
  - 5. 기타 기본재산의 운용 및 재단수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입금
- ③ 기금의 운영·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하되,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④ 기부금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.

**제24조(사업연도 및 회계)** ① 연구원의 사업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의한다.

- ② 연구원의 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르되, 예산 및 회계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회계규정으로 정한다.

**제25조(사업계획과 예산)** 연구원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, 추가경정예 관한 사항 또한 같다.

**제26조(결산)** 연구원은 사업연도마다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세입·세출의 결산서와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- 1.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
- 2.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
- 3.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.

**제27조(손익금의 처리)** ① 연구원의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- ② 연구원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,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준비금 등으로 적립한다.
- ③ 연구원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에 따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이사

회 승인을 거쳐 준비금으로 이를 보전하고, 부족할 때에는 이월한다.

## 제4장 조직 및 정원

- 제28조(조직 및 정원)** ① 연구원에 연구부서, 행정부서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를 두며,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 및 정원 규정으로 정한다.
- ② 시장은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소속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
## 제5장 이사회

- 제29조(설치 및 구성)** ① 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이사회를 둔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언할 수 있다.

**제30조(의결사항)**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연구원의 기본운영방침에 관한 사항
2.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
3.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
4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5. 조직,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
6.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
7. 제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
8.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
9. 연구원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
10. 법령, 조례,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11. 전 각호 이외의 사항으로서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- 제31조(이사회 의 소집)**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.
-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소집한다.

- ③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가 요청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.
- ④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에 그 목적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.

**제32조(의결방법)**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② 이사장은 표결권을 가지며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- ③ 이사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을 이사회 개의 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이사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의결할 수 있다.

**제33조(이사회 의결 제척사유)**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1. 이사의 선출 및 해임 등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연구원의 이해가 상반될 때

**제34조(회의록)**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-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,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, 의장과 참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-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연구원의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.

## 제6장 연구자문위원회

**제35조(설치 및 운영)** ① 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로 연구자문위원회(이하 위원회)를 둘 수 있다.

-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.

## 제7장 보 칙

**제36조(정관의 변경)** 연구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

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,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- 제37조(규정의 제정)** ① 이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서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.
- ② 직제 및 정원 규정을 제정 또는 개·폐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- 제38조(해산)** ① 연구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② 연구원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에 귀속한다.

**제39조(공고방법)** 연구원의 설립·해산 등 중요한 사항의 공고는 시 또는 연구원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다. 다만 경미한 사항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에 게시할 수 있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정관은 소관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법원의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임원의 임기)** 연구원 설립 후 최초의 임원임기는 연구원 설립 등기일로부터 기산한다.

**제3조(사업연도)** 연구원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연구원 설립 등기일로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로 한다.

**제4조(사업계획 등)** 연구원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연구원 설립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**제5조(조례 또는 직제 개·폐 등에 의한 적용)** 제6조의 당연직 임원은 조례 또는 서울특별시 직제의 개·폐 등으로 변경된 경우, 그 직명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.

**제6조(경과조치)** ① 연구원의 설립 이전에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

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- ② 제5조 내지 제6조와 관련하여 최초 원장 선임 시까지의 원장의 직무는 서울특별시 안전총괄본부장이 대행한다.
- ③ 제8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구성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방공기업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.

### 부 칙 (2019.3.8.)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소관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 (2019.9. .)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〈별표〉

#### 기본재산 목록

구 분	출 연 자	금 액(원)	비 고
계		500,000,000	
현금	서울특별시	500,000,000	설립출연

◆ 서울시 출연기관의 정관 사례(위탁사업 관련)

▶ 서울산업진흥원 정관 제4조(사업의 범위) 제14항

: 시장이 위탁하는 중소기업 육성사업

▶ 서울연구원 정관 제4조(사업) 제5호

: 정부, 지방자치단체 및 국·내외의 연구기관과 민간단체로부터의 연구용역, 원가계산 등의 수탁

▶ 서울디지털재단 정관 제4조(사업의 범위) 제3호

: 개포 디지털혁신파크 운영 등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위탁하는 디지털 관련 사업

▶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제4조(사업의 범위) 제9호

: 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(이하 '시장'이라 한다)이 위탁하는 사업

▶ 서울신용보증재단 정관 제22조(업무) 제9호

: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 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

▶ 세종문화회관 정관 제4조(사업의 범위) 제7호

: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(이하"시장"이라 한다)이 위탁하는 사업

▶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제4조(사업의 범위) 제10호

: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는 사업